

관세법

[시행 2026. 8. 11.] [법률 제21858호, 2026. 8. 11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재명 (인)

2026년 8월 11일

국무총리 한성숙

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

⊙ 법률 제21858호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

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5조의5의 제목 중 "취소"를 "취소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(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.

제328조제9호 중 "제255조의5"를 "제255조의5제1항"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5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